

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 2. 22. 개정 2018. 1. 16.)

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원, 기금교원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 (신설 2018. 1. 16., 개정 2018. 12. 10.)

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 청구논문 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발표하고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 (신설 2018. 12. 10.)

제41조(논문 제출자격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 5. 22, 2015. 7. 10.)

1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

2.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(개정 2013. 2. 22 개정 2018. 1. 16.)

3.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(개정 2018 1. 16.)

4.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(개정 2013. 2. 22, 개정 2014. 12. 5.)

5.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(개정 2013. 2. 22. 개정 2018. 1. 16.)

6.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(신설 2013. 2. 22. 개정 2018. 1. 16.)

②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 1. 16.)

1. ‘표절검사결과확인서’

2. ‘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’